

# 대법원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두산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895)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원고 오딘2(유)(이하 '원고 오딘2')가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주)(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등으로부터 그 소유의 DICC 지분을 매수하면서 체결한 '[DICC 주주간 계약](#)' 및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툰 유한회사,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시니안 등')가 지위를 승계한 제2투자자들이 두산캐피탈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두산캐피탈의 주주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두산중공업(이하 '피고 두산 등', 이후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피고 두산 등의 지위를 승계)과 사이에 체결한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 (1) DICC 주주간 계약과 관련하여,

- 위 계약에서는, DICC가 3년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일방(매도주주)이 그 소유의 DICC 지분을 매도할 수 있고 그때 상대방의 DICC 주식까지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동반매도요구권](#)),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상대방은 그에 동의하거나([x항](#)), 자신이 매도주주의 DICC 주식 전부를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가격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 중 자신의 선택에 따른 가격으로 매수하거나([y항](#)) 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z항](#)) 정하였음.

- 원고 오딘2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DICC 주식 100%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소개서 작성 단계에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불발되었음.

① 원심은,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의 결정이 동반매도요구권의 조건이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에 대해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어야 하는데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위 (x), (y), (z) 가운데 (y)만이 유일하게 이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원고 오딘2 소유의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따라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②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함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 오딘2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심판단은 타당함. 그러나 원고 오딘2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협조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소유의 DICC 주식을 매도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z)항이 선택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실상 기업인수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매각절차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2)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과 관련하여,

원심은 ① 피고 두산 등의 기망에 의해 두산캐피탈의 주식(실권주)을 인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거나, ②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기업공개 의무, 회구보증약정을 유지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③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여러 행위를 지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원고 시니안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하여 위 판단과 관련한 원고 시니안 등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였음

다만, 원심은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에 따라 그 상대방인 피고 두산 등이 '두산캐피탈이 (그 소유의) DCFL의 지분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이 DCFL 지분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원심판단이 타당하고,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하였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 원고 오딘2가 그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그 소유의 DICC 주식 20%를 3,800억 원에 매수하면서 DICC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3년 내에 DICC가 상장하지 못하면 일방 주주(매도 주주)는 그 소유의 DICC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상대방 소유 주식 전부를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동반매도요구권, drag-along right)

- 상대방 당사자는 매도주주의 동반매도요구에 동의하거나[(x)], 매도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가격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 중 상대방 당사자가 선택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y)], 매도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z)],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매도결정통지를 수령하고도 14일 이내에 위 (x), (y), (z)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x)로 간주됨
- 3년 내에 DICG가 상장하지 못하자 원고 오딘2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DICG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게 투자소개서 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오딘2가 요구하는 자료 전부가 그대로 제공되지는 않았음
- 결국 원고 오딘2가 투자소개서 작성을 준비하던 중에 이 사건 매각절차는 중단되었음
- 원고 오딘2는,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의 결정이 동반매도요구권의 조건임을 전제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조건성취 의제, 즉 매매계약 체결 의제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나.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원고 시니안 등이 지위를 승계한 제2투자자들이 두산캐피탈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두산캐피탈의 주주인 피고 두산 등과 사이에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
- 원고 시니안 등은, 피고 두산 등은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에 따라 종속회사인 DCFL의 지분을 유지할 의무를 비롯한 여러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두산 등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주위적 청구), 피고 두산 등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제1예비적 청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제2예비적 청구) 등을 묻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2. 소송 경과

■ 1심은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 원심은, 다음과 같이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 DICC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의 결정이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이라고 보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에 대해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어야 하는데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위 (x), (y), (z) 가운데 (y)만이 유일하게 이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원고 오딘2 소유의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따라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원심이 인정한 매매대금 액수는 약 7,903억 원인데,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한 금액이 100억 원이어서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액수의 원금은 100억 원임
- 원고 시니안 등이 DCFL 주주간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주장한 여러 의무 중에서,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DCFL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어떤 행위를 통해 두산캐피탈 경영진으로 하여금 DCFL 지분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시니안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그밖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 등도 모두 배척됨)

##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 파기환송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원고 오딘2에 대한 협조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은 인정됨

- DICC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면 결국 그 매각대상은 DICC 지분 100%가 되므로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는 DICC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기업인수의 효과를 가져오는 점, 원고 오딘2가 DICC 지분 100%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가 있어야만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 오딘2가 진행하는 매각절차의 상황과 진행단계에 따라 DICC 지분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적기에 DICC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DICC를 실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
- 더불어 원고 오딘2 역시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매도주주로서,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인수목적이나 의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음**
- 원심이 원고 오딘2가 하였던 모든 자료제공 요청이 정당하다고 본 부분은 부적절하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타당함

▣ 다음과 같은 일반법리를 실시함

-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이 그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말미암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지는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임**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

- 민법 제150조<sup>1)</sup>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지만, 민법 제150조 제1항이 방해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함.
- 또한 민법 제150조는 사실관계의 진행이 달라졌더라면 발생하리라고 희망했던 결과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을 유추적용할 때에도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의제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인정해서는 아니 됨.

▣ 앞서의 일반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원고 오딘2 소유의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는 원심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 사건 계약상 신의칙에 반하는 협력의무 위반이 있어서 조건 성취를 의제하려고 하더라도 매도주주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실제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소유의 DICC 주식을 매도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매각금액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을 의제할 수도 없음
- (원고 오딘2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x), (y), (z) 중 상대방의 결정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 이와 같이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을

1)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조건 성취 방해에 따른 조건 성취를 의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의 (x), (y), (z)의 관계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y)와 (z)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선택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x)와 (y), (z)는 기본 원칙과 그 원칙을 변경할 수 있는 추가적 권리를 정한 것이고, 원심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서로 대등한 병렬적인 선택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동반매도요구권이 행사되어 DIC의 지분 100%가 매도될 수 있음을 전제로 진행되었던 이 사건 매각절차는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기업인수절차와 같고, 기업인수계약과 마찬가지로 본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나.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나머지 상고 기각

##### ▣ 다음과 같은 일반법리를 설시함

-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함.

##### ▣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DCFL 지분유지의무를 인정하고도 채무불



## 이행 책임을 부정한 부분을 파기하였음

- DCFL 주주간 계약서에 “두산 측 주주는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 쌍방이 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두산 측 주주와 두산캐피탈, DCFL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두산 측 주주는 위 주주간 계약에 따라 DCFL의 지분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한 원심판단은 정당함
  - 그런데 두산캐피탈은 결국 DCFL의 지분을 전부 매각함으로써 그 지분을 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차로 DCFL의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원고 시니안 등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 두산 등으로부터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이와 같이 원고 시니안 등에 대하여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대한 책임이 있음**
- ▣ 그밖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함
- 원고 시니안 등이 피고 두산 등의 기망에 의하여 두산캐피탈의 신주(실권주)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위 계약에 따라 두산캐피탈 상장을 해야 할 의무,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유지해야만 하는 의무 또는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두산캐피탈의 위험한 투자를 제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C와 DCFL로 하여금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두산캐피탈에 2차 DCFL 지분 매각을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이 변경되고 2차 DCFL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인

정하기 어려움

#### 4. 판결의 의의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투자자들과 대상기업 주주 사이에 체결되는 주주간 계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조항들의 해석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에 지침을 될 수 있는 판결임
- 특히 ①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 조항을 약정한 경우**, 위 권리를 행사할 것을 전제로 주식 매각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상황과 진행단계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② 일방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그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콜옵션(상대방이 일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한 경우의 해석, ③ **그러나 위와 같은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문면에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히 판단하였음